

1. 개정이유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기준 및 경영실태평가 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0.12.22 공포, '21.6.23. 시행)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21.6.23. 공포·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산관리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에 따라 마련(안 제9조의2)
- 나.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계량·비계량 평가항목과 5개 평가등급을 신설하고, 평가 면제대상도 규정(안 제9조의3)
- 다. 평가등급이 낮은 회사에게 경영개선을 권고(안 제9조의4)
- 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회사에게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 부과 및 개선계획의 미승인 시 경영개선명령 가능(안 제9조의5)
- 마. 자산관리회사의 회계기간 말의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45일에서 90일로 연장(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2022년 29억원(한국부동산원 위탁사업비)의 예산이 반영되

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을 “임원·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경력증명서”를 “각각의 경력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를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제목 외의 부분 중 “자기관리”를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제출하는 자기관리”로,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를 “투자보고서”로, “제출”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변경”을 “변경(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영 40조의2제2항제2호”를 “영 제40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는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가 시점의 금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유지요건의 판단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로 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자산관리회사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위험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산관리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나.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다. 자산의 운용방법

라.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마.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바. 단기차입금 한도

사. 재무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아. 위반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차. 위험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자산관리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가.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나. 자산관리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의 결정

다.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라.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③ 영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적정성, 그 밖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는 적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2. 자산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의 설정

나. 관련 규제 준수 방안

다. 수탁재산의 구분 관리체계

라. 기타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9조의3(경영실태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영 제47조의6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장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재무상황과 업무상태 및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해야 한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별표 1의 평가부문별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한다.

③ 경영실태평가 중 계량항목 평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비계량항목 평가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경영실태평가의 요소별 평가항목과 종합평가등급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부동산원장이 정한다.

⑤ 경영실태평가의 종합평가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른 개념은 별표 2와 같다.

⑥ 한국부동산원장은 제5항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산관리회사 경영실태평가의 최종등급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종합 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자산관리회사에 평가등급과 개선권고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법 제39조의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
인으로서 법령에 따라 경영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평가를 받는 기관
2. 법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 해당연도 및 그 다음연도 내에 있는
자산관리회사

제9조의4(경영개선권고)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경영실태평가의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
2. 영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자기자본이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조치”는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자기자본 감소행위의 제한, 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5(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9조의4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법 제39조제2항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산관리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자산관리회사는 매분기말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요출자자(자본금의)”를 “주요 주주(주식을)”로, “이상을 출자하는 자”를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관련회사의 의

결권 있는”을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로 한다.

4. 임원의 변경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 ① 자산관리회사는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보고서의 작성시기 및 제출기한은 영 제40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를 “한국거래소가”로, 같은 서식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를 “한국거래소에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 설>

경영실태평가 요소별 평가항목

1. 경영실태평가 요소별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자본적정성	자기자본 규모	- 적정 자본 유지 가능성 - 자기자본 유지 정책
수익성	- 총자산순이익률 - 수지비율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영업별 수익과 비용의 특성
수탁 자산관리 적정성	- 적정 수탁자산 - 수탁자산 증감률 - 자산운용전문인력	- 수탁자산 위험관리체제의 적정성 - 수탁자산 운용의 합리성
내부통제	리츠 관련 법규 위반	-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 적정성 - 규정 위반의 특성 및 정도

2. 계량항목의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음

- 가. 자기자본 규모는 결산기 영업보고서 기준 자본총계로 측정
- 나. 총자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자산총계)로 측정
- 다. 수지비율은 (영업수익/영업비용)으로 측정
- 라. 수탁자산은 결산기 영업보고서 기준 수탁자산 규모로 측정
- 마. 수탁자산 증감률은 결산기 영업보고서 기준 전기말 수탁자산 대비 당기말 수탁자산의 증감률로 측정
- 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적정성은 법정 최소 전문인력 이상으로 수탁재산 규모, 수탁리츠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필요 인력으로 산정
- 사. 내부통제 관련 계량 점수는 리츠 관련 법규 위반의 건수 및 징계의 경중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

종합평가등급

평가 등급	평가	평가수준
1등급	우수 (Strong)	○ 경영 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 리츠의 자산관리 상태가 우수함
2등급	양호 (Satisfactory)	○ 전반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이 발견되어 부분적인 시정이 필요할 수 있음 - 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리츠의 자산관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함
3등급	보통 (Less than Satisfactory)	○ 재무상태, 내부통제, 법규 준수 측면에서 일부 취약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될 수 있음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1-2등급에 비해 외부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리츠의 자산관리 상태가 보통임
4등급	취약 (Deficient)	○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경영상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시장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함 - 자산관리 지속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리츠 자산관리 상태가 미흡함
5등급	위험 (Critically Deficient)	○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자산관리 지속 가능성이 낮음 - 리츠 자산관리 운용능력이 매우 취약 - 조속한 시정 조치가 필요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 다)·동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동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한 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 ----- ----- ----- -----.
제6조(관련서류의 비치·공시)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 및 지 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채권자 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현황 및 경력증명서</u> 3. ~ 10. (생략) ② ~ ④ (생략)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사무수탁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	제6조(관련서류의 비치·공시)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임원·자산운용전문인력</u> --- ----- <u>각각의 경력증명서</u> 3.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및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 후 45일 이내에 매 분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보고사항)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② (생략)

제8조의2(정보의 공시) ① 영 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

---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

-----.

제7조(투자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를 영 제40조제1항의 시기에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기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보고사항)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변경(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정보의 공시) ① 영 제40조의2제2항제2호-----

실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 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③ (생략)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

전성 기준)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는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가 시점의 금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유지요건의 판단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로 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 · 평가 · 감시 ·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자산관리회사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위험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산관리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최소 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나.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다. 자산의 운용방법

라.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마.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바. 단기차입금 한도

사. 재무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아. 위반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차. 위험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자산관리회사의 이사회는 위
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 위원
회”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가.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
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나. 자산관리회사가 부담 가
능한 위험수준의 결정

다.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
허용한도 승인

라.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③ 영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적정성,
그 밖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따라 자산

<신 설>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는 적절한 자산 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내부 통제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2. 자산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의 설정

나. 관련 규제 준수 방안

다. 수탁재산의 구분 관리체계

라. 기타 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9조의3(경영실태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영 제47조의6제1항 제3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장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재무상황과 업무상태 및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해야 한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별표 1의 평

가부문별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종합등급을 결정한다.

③ 경영실태평가 중 계량항목 평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비계량항목 평가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경영실태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부동산원장이 정한다.

⑤ 경영실태평가의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종합평가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른 개념은 별표 2와 같다.

⑥ 한국부동산원장은 제5항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산관리회사 경영실태평가의 최종등급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 설>

결정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등급 평가가 실시된 이후 해당 자산 관리회사에 평가등급과 개선조치 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 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법 제39조의 감독 및 감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법령에 따라 경영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평가를 받는 기관

2. 법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 해당연도 및 그 다음연도 내에 있는 자산관리회사

제9조의4(경영개선권고)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1. 경영실태평가의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
 2. 영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자기자본이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조치”는 인력 및 조직 운용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자기자본 감소행위의 제한, 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을 말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의5(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9조의4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10조(자산관리회사의 보고사항) ①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u>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법제39조제2항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산관리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u> ④ <u>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자산관리회사는 매분기말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제10조(자산관리회사의 보고사항) ① ----- ----- ----- ----- -----.
---	---

1. ~ 3. (생략) 4. <u>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대표자에 한한다)의 변경</u> 5. <u>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의 변경</u> 6. <u>주요출자자(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를 말한다)의 변경</u> 7.·8. (생략) 9. <u>관련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u> ② (생략)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u>자산관리회사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u>의하여</u> 작성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u>임원의 변경</u> 5. <u>자산운용전문인력</u>----- ----- 6. <u>주요 주주(주식을</u> ----- --- <u>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u> ----- 7.·8. (현행과 같음) 9. <u>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u>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u>자산관리회사는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보고서의 작성시기 및 제출기한은 영 제40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u> ② ----- ----- <u>따라</u> ----- ---.
--	--